

정책연구보고 P69/ 2004. 9.

# 대만의 쌀 시장 개방과 시사점

정정길 연구위원

이현주 초청연구원

## 머 리 말

2004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쌀의 해’이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2004년은 쌀 시장 개방 확대라는 당면 과제가 주어진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WTO 쌀협상이 2004년에는 우리 농정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농업계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가 앞장선 가운데 온 나라가 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농업이나 농민, 즉 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농가 중 75%가 벼농사를 짓고 있고, 농가소득의 20%가 벼농사로 얻어지며, 특히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50% 이상이 쌀에서 획득된다. 한편 소비 측면에서 보면, 쌀은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유지시켜 주는 주식이다.

이처럼 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협상을 잘 하려면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앞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처했던 다른 나라의 경험은 훌륭한 거울이 될 것이다.

대만은 2002년 WTO 가입과 동시에 관세화유예 방식의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세화유예 시행 1년도 되기 전에 관세화유예를 중단하고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만은 쌀 수출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시장개방 요구를 강요당했다.

이 연구는 대만의 쌀 관세화 과정, 수입 쌀 관리방식과 관세화 이후 국내 쌀 정책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쌀협상 전략 마련과 이후 농정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4.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	2
3. 주요 연구 내용 .....	3
<b>제2장 대만 쌀산업 현황</b> .....	4
1. 쌀 수급 실태 .....	4
2. 쌀 관련 정책 .....	7
<b>제3장 대만 쌀 시장 개방 과정</b> .....	13
1. WTO 가입 협상 과정과 내용 .....	13
2. WTO 가입 조건 .....	13
3. WTO 가입에 따른 쌀 시장 개방 내용 .....	17
4. 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 과정 .....	23
<b>제4장 대만 쌀 시장 개방 영향</b> .....	28
1. 국내 쌀 수급 변화 .....	28
2. 수입 쌀의 국내 유통 및 판매 .....	30
3. 쌀 가격 추이 .....	32
4. 국내 쌀 관련 정책의 변화 .....	34
<b>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b> .....	41
1. 쌀협상에 관하여 .....	41
2. 국내 대책에 관하여 .....	43
Abstract .....	53
참고문헌 .....	54

## 표 목 차

표 1. 대만의 쌀 수급 추이 .....	6
표 2. 벼 수매방식의 변천(계획수매) .....	10
표 3. 벼 수매방식의 변천(보도수매) .....	10
표 4. 쌀 생산 목표 달성 현황(논밭이용조정계획) .....	12
표 5. 수매방식별 수매가격 및 수량 .....	12
표 6. WTO 가입 후 관세할당으로 이행하는 품목 .....	15
표 7. WTO 가입 후 관세화 품목 .....	16
표 8. 기준 연도 쌀 가격과 Mark-up .....	18
표 9. 대만의 쌀과 쌀 제품 수입관세율 및 조건 .....	22
표 10. 쌀의 관세상당치 .....	25
표 11. 브랜드 쌀 가격과 도매가격지수 .....	26
표 12. 쌀의 실제 수입량(HS10006) .....	26
표 13. WTO 가입 후 대만 쌀 수급 현황 .....	29
표 14. 대만의 WTO 가입 후 국가별 쌀 수입량, 2002-03 .....	30
표 15. 계획생산의 윤작, 휴경 및 교대식 휴경 조치의 장려 기준 .....	34
표 16. 양질미 생산 지도 계획 신청 면적 .....	36
표 17. 쌀 여량수매 실시 기준 및 집행 실적 .....	38

## 그림 목 차

그림 1. 대만의 쌀 생산량 .....	7
그림 2. 대만 1인 1년당 쌀 공급량 .....	7
그림 3. 대만의 중단립종 벼 생산자가격, 2002-04 .....	33
그림 4. 대만의 중단립종 쌀 가격 추이, 2002. 1-2004. 8 .....	33

## 부 표 목 차

부표 1. 대만 쌀 수출입 추이, 1989-93 .....	45
부표 2. WTO 가입 후 대만 쌀 수출입 추이, 2002-2004. 8 .....	47
부표 3. 대만 쌀과 쌀 조제품의 국별 수입 현황, 1989-95 .....	48
부표 4. 대만 쌀과 쌀 조제품의 국별 수입 현황, 1996-03 .....	49
부표 5. 쌀과 쌀 조제품의 국별 수출 현황, 1989-95 .....	50
부표 6. 쌀과 쌀 조제품의 국별 수출 현황, 1996-03 .....	51
부표 7. 대만 쌀 가격 및 정부수매가 변동 추이 .....	52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의거 2004년 이후 쌀의 관세화유예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개 이해당사국과 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한 협상 전략 수립과 함께 기존 쌀 시장 개방 협상을 경험한 사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 대만은 2002년 1월 1일을 기해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WTO 가입과 동시에 쌀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으나,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이듬해인 2003년 1월부터 관세화 유예를 중단하고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서 관세화로의 쌀 시장 개방 협상을 경험한 바 있고, 개방 이후에 대만 국내에 쌀산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 대만의 사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협상의 전략 수립과 함

계 협상 이후 우리 쌀 시장의 반응 예측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이미 쌀 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한 대만의 쌀 시장 개방 과정, 시장개방 전후의 국내 쌀산업 변화, 쌀 시장 개방의 영향, 그리고 수입 쌀 관리방식과 관세화이후 국내 쌀 정책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협상에 우리나라의 전략 수립과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 특히 수입 쌀의 국내유통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대만의 쌀 협상 경험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 국내외 선행 연구, 보도자료 등 문헌 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현지출장조사: 대만 행정위원회 국제합작처를 방문하여 협상에 직접 참여한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쌀 시장 개방 과정과 관세화로의 전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농량서(農糧署)를 방문하여 정부와 민간의 쌀 수입 실태, 양곡업체의 쌀 수입권 입찰 현황, 수입 쌀의 처리 방식, 국내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농업시험소에서는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쌀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고품질 쌀 품종 개발과 기술보급 실태를 조사하였고, 농회에서는 농민들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농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

다. 이 밖에도 슈퍼나 백화점 식품코너를 둘러 국내 쌀 유통 및 판매 현황을 파악하였다.

### 3. 주요 연구 내용

- 먼저 제2장에서 WTO 가입 이전의 대만 쌀산업 현황을 쌀 수급과 정책적인 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제3장에서는 WTO 가입을 통한 대만 쌀 시장 개방 과정과 내용 및 관세화로의 전환 과정 등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대만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쌀 수급 변화, 수입 쌀의 처리, 국내 쌀값 추이 및 쌀 관련 정책 변화 등을 살펴보고, 끝으로 제5장에서는 대만의 쌀 시장개방(관세화)이 우리나라의 쌀협상이나 국내대책 마련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 제 2 장

# 대만 쌀산업 현황

### 1. 쌀 수급 실태

- 쌀은 대만 국민의 주식이며, 농작물 가운데 재배면적과 생산 농가 수가 가장 많은 품목이다. 과거에는 국내 수요에의 자급 달성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민이 생산한 쌀을 정부가 보증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동시에 외국으로부터의 쌀 수입을 금지해왔다.
- 195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대만의 농업정책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증산정책 위주로 전개되었다. 대만정부가 토지개혁, 농업 생산기반 정비, 생산자재 공급 및 품종 개발과 보급 등 정책 조치를 통해 식량증산에 주력한 결과 벼의 단위수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벼 재배면적도 대폭 확대되었다.
- 특히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해소와 농업 여건 개선을 위하여 쌀에 대하여 1974년부터 「쌀 보증가격수매(稻米保價收購)」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지지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쌀 생산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급기야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 1976년에 정부의 벼 수매 방식을 수매량에 대한 무제한 수매에서

한정수매로 전환하였으나 생산량은 그해와 그다음 해까지 계속 증가하여 1977년의 생산량이 역대 최고기록인 267만 톤에 달했으며 2003년 현재 134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 또한 쌀 생산의 증가는 쌀 자급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외화 획득을 실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1983년에는 무려 69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대만은 1984년 미국과 ‘중·미 간 쌀 수출협정(中·美米食外銷協議)’을 체결함으로써 해외 수출이나 원조를 통해 그간 쌀 공급과잉을 해소해 오던 정책수단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대만의 쌀 정책은 생산 감소정책, 벼논전작정책 및 소비촉진정책으로 전환되었다.
- 한편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소득의 증가와 식량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쌀의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축산물 소비 증가로 사료 곡물인 옥수수과 대두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 용도별 소비 추세를 살펴보면, 사료용은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며, 가공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종자, 감모, 식용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순식용의 경우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67년에 141.47kg으로 최고수량을 기록한 이후 차츰 감소하여 1981년에는 100kg 이하로 떨어졌으며 1986년에 70kg대, 1989년에 60kg대, 1994년에는 50kg대, 그리고 2001년 당시 50.1kg으로 35년 전과 비교하여 약 35%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일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0kg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다량의 쌀을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대만의 쌀 소비의 한 특색이라 하겠다.

표 1. 대만의 쌀 수급 추이

단위: 1,000톤

연도	생산량	국제무역		국내 공급량	국내공급					1인당 연간 공급량(kg)
		수입량	수출량		사료	종자	가공	감모	식용	
1972	2,325.3	6.7	17	2,369.3	71.1	33.9	44.8	23.8	2,195.9	133.52
1973	2,318.1		95.6	2,346.3	70.4	34.1	41.5	23.5	2,176.8	129.84
1974	2,432.9	141.0	7.1	2,455.2	73.7	36.1	31.3	24.6	2,289.5	134.15
1975	2,487.6	17.1	1.2	2,405.1	48.1	36.1	30.5	24.1	2,266.3	130.39
1976	2,623.8	4.8	2.0	2,423.1	48.5	35.8	45.7	24.2	2,268.9	128.12
1977	2,670.4	8.4	169.9	2,417.9	48.4	35.3	46.1	24.2	2,263.9	125.06
1978	2,563.2	1.3	281.6	2,256.0	45.1	33.9	54.4	22.6	2,100.0	113.99
1979	2,393.2		429.5	2,181.8	43.6	42.9	62.8	21.8	2,010.7	107.04
1980	2,468.6	0.1	295.7	2,171.2	43.4	28.9	57.0	21.7	2,020.2	105.49
1981	2,362.3	12.6	86.3	2,094.0	41.9	30.4	60.2	20.9	1,940.6	99.44
1982	2,427.1	1.3	258.8	2,054.4	41.1	30.1	60.7	20.5	1,902.0	95.77
1983	2,485.2	3.4	694.8	1,973.9	25.9	30.6	55.8	18.6	1,843.0	89.20
1984	2,244.2	3.7	230.7	2,047.1	173.0	27.8	56.9	19.6	1,769.8	84.40
1985	2,173.5	3.2	51.6	2,094.8	281.8	26.8	61.3	20.1	1,704.9	80.19
1986	1,973.8	4.6	219.3	2,000.2	217.4	25.5	75.4	19.0	1,662.9	76.46
1987	1,900.5	5.1	283.6	1,988.6	229.2	23.8	105.1	18.6	1,612.0	73.33
1988	1,844.8	4.8	135.1	1,988.2	284.6	22.3	103.2	18.6	1,559.5	70.14
1989	1,864.6	4.1	108.9	1,860.6	174.0	22.6	112.3	17.3	1,534.5	68.27
1990	1,806.6	5.7	121.7	1,833.5	180.3	21.6	115.8	17.0	1,498.8	65.94
1991	1,818.7	5.9	309.6	1,897.2	298.0	20.3	108.5	17.7	1,452.7	62.50
1992	1,627.9	6.3	291.0	1,694.2	83.7	18.8	115.4	15.6	1,460.6	62.23
1993	1,819.8	8.6	132.0	1,728.0	140.2	19.1	114.7	15.9	1,437.9	60.70
1994	1,678.8	6.0	137.5	1,680.4	112.3	17.9	102.9	15.6	1,431.6	59.89
1995	1,686.5	6.2	213.4	1,644.4	87.6	17.8	99.0	15.3	1,424.8	59.10
1996	1,577.3	5.7	120.1	1,567.5	8.6	17.0	101.2	14.5	1,430.0	58.84
1997	1,662.7	6.2	99.0	1,565.1	21.7	17.8	95.7	14.7	1,432.0	58.40
1998	1,489.4	4.7	77.3	1,538.6	56.4	17.5	97.6	14.8	1,404.2	56.74
1999	1,558.6	6.1	140.6	1,505.5	209.3	17.3	98.1	15.9	1,369.5	54.90
2000	1,540.1	7.7	157.1	1,451.5	76.8	16.6	91.3	14.2	1,324.8	52.69
2001	1,396.3	7.4	197.0	1,390.1	67.1	16.2	88.0	13.5	1,268.2	50.10

그림 1. 대만의 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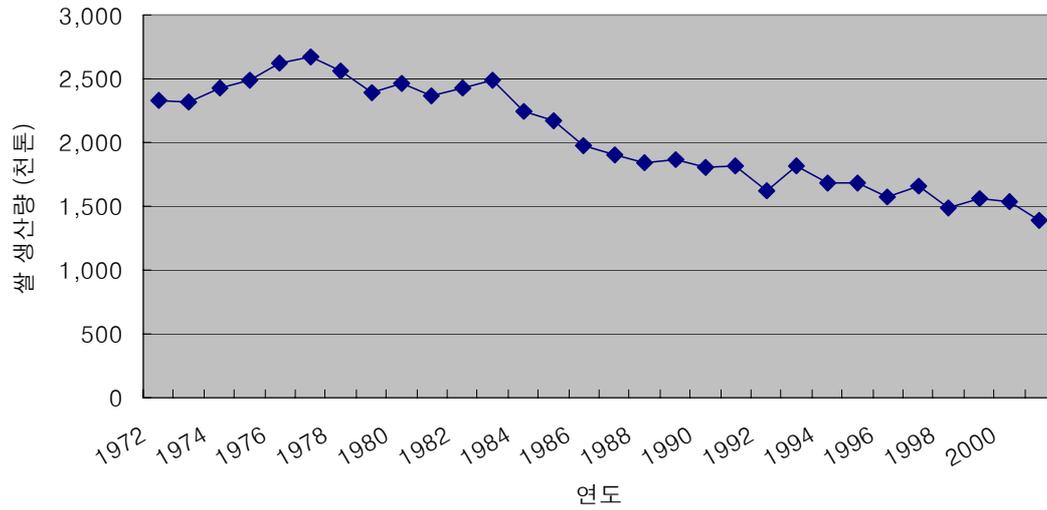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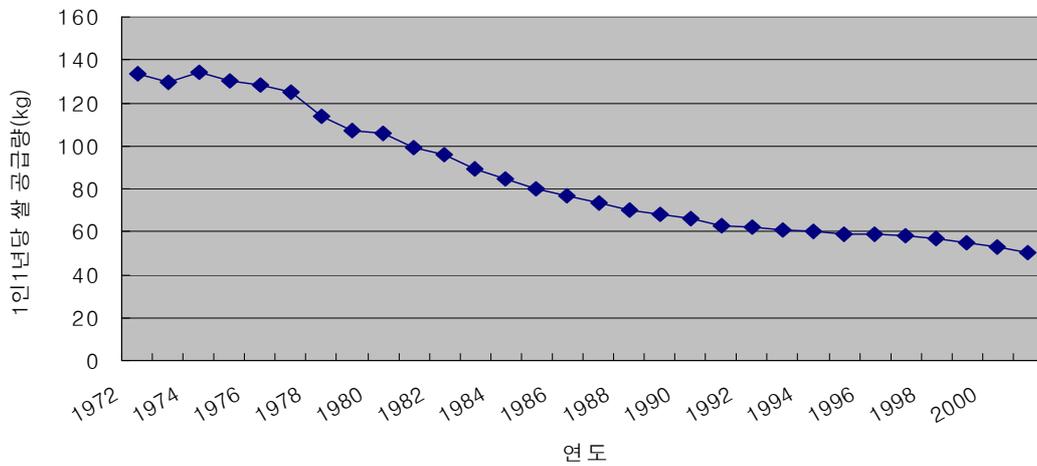


그림 2. 대만 1인 1년당 쌀 공급량



## 2. 쌀 관련 정책

- 대만의 쌀산업은 광복 이후 철저한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는데, 정부의 쌀산업정책은 크게 발전정책(1946~1973년)과 보상정책(1974~현재)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발전정책의 주요 목표는 농민의 증산을 장려하고, 생산량 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고, 보상정책은 보조 또는 각종 우대 조치를 통해 농민의 소득 증대와 권익 보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 2.1. 발전정책(1946-73)

- 일제강점기의 대만은 일본이 ‘공업일본, 농업대만’의 경영전략을 추진하였던 것에 기인하여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농업은 대만의 광복 초기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 2.1.1. 농지세 실물징수(1946-73): 토지세 실물징수조례(田賦徵收實物條例)

- 확실한 식량 공급원을 장악하고 공공식량 조절을 위하여 토지세 실물징수조례를 제정하였다.
- 지주와 자경농이 납부해야 하는 농지세(田賦)를 일률적·강제적으로 실물(벼)로 징수하도록 하였다.
- 벼 징수는 식량국(糧食局)이 전담하였다.

### 2.1.2. 농지세에 준한 벼 수매(隨賦徵購: 1947-88)

- 농지세 실물징수 제도는 강제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당시의 수매가격이 시가보다 10% 가량 낮았기 때문에 ‘징수’라고 칭하였다.
- 「농지세에 준한 벼 수매」 적용 가격은 당기 벼 생산비에 합리적인

이윤을 더한 것에, 당시의 물가와 일반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이후 1975년부터 계획수매가격에 준하여 가격을 정하여, 가령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기장가격으로 수매하다가, 1989년부터는 계획수매에 편입함으로써 이 규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 2.1.3. 비료환곡(1946-73)

- 이 제도는 「대만성정부 화학비료 배급판매규정」에 의거 1946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일종의 물물교환 방식이다.
- 물물교환 방식을 도입하여 농민이 화학비료 구입대금을 전액 현물(벼)로 지불하거나 또는 일부 현물(40%) 일부 현금(60%) 방식으로 지불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69년까지는 대만 정부가 식량 확보를 위하여 취한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이었으나 1970년 이후 비료환곡 비율이 차츰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장악하는 양곡 수량도 차츰 줄어들었는데, 결국 1973년에 이르러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 2.2. 보상정책(1974~현재)

- 1974년을 기점으로 대만의 농업정책은 발전 정책에서 보상 정책으로 전환되어, 정부는 보조나 각종 우대 조치 등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국내 식량 부족을 해소하고 동시에 쌀값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 2. 벼 수매방식의 변천(계획수매)

수매명칭	수매기간	수매방식	ha당 수매량	설명
최저수매 가격수매	1974년 제1기~ 1976년 제1기	무제한	무제한수매	
여량수매	1976년 제2기	여량에 한함	縣과 期에 따른 여량 기준	ha당 기당 1,500~3,000kg
계획수매	1977년 제1기~ 1988년 제2기	제한을 둠	970kg	전국 동일
	1989년 제1기~ 1992년 제2기		제1기 1,600kg 제2기 1,200kg	전국 동일, 隨賦徵購수량 편입으로 수매량 증가
	1993년 제1기~		제1기 1,920kg 제2기 1,440kg	수매량 20% 증가

주: 기(期)는 벼농사를 연간 제1기작과 제2기작으로 구분함을 의미함.

표 3. 벼 수매방식의 변천(보도수매)

수매명칭	수매기간	수매방식	ha당 수매량	설명
농회를 통한 여량수매	1978년 제1기~ 1985년 제2기	여량에 국한	기당 약2,000kg	각 현시, 각 기별 여량수매기준 확정: 1. 사실상 농회를 지도하여 수매 하는 것이 아니 므로 명칭을 보 도수매로 개정 2. 매 기당 수매량 은 식량평준기금 액에 의거 산출
보도수매	1986년 제1기~ 1988년 제2기		제1기 850kg 제2기 500kg	
	1989년 제1기~		제1기 1,200kg 제2기 800kg	

- 이에 1974년 식량평준기금(糧食平準基金)을 설립하여 쌀을 수매하고 합리적인 쌀값을 유지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쌀 증산을 촉진하게 되었다.
  - 이 기금의 주요 용도는 벼 수매, 무이자 미곡생산 용자, 식용 쌀 수입, 쌀 증산에 필요한 외국 물자 구매, 시장수급 조절, 식량 안전 재고 유지 등이었다.
- 식량평준기금으로 보증가격수매를 실시한 이후 쌀 생산은 1973년의 225만 톤에서 1976년의 271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내 소비자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감소하여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고누적 등 재정부담이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농업구조조정과 벼논 전작정책을 추진하여 계획생산을 실시하고 전작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민들의 쌀 생산을 감소하도록 유도하였다.
  - 이 정책은 우선 「쌀 생산 및 벼논 전작 6년 계획(1984~89년)」이란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 경지이용조정계획(水旱田利用調整計劃)
  - 대만 정부는 WTO 가입 이후를 대비하여 국내 농업 발전, 식량의 안정적 확보, 식량가격 안정적 유지, 농민의 권익보호, 농지의 지속적 이용 등을 목표로 1997년부터 「경지이용조정계획(1997~2000년)」을, 그리고 이어 2001년부터 「경지이용조정후속계획(2001~2004)」을 수립 시행하였다.
  - 벼 재배면적은 1997년 36만 4천ha에서 2004년 26만 4천ha로 감축하고, 생산량은 동기간 166만 3천 톤에서 118만 톤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4. 쌀 생산 목표 달성 현황(경지이용조정계획)

단위: 만ha, 만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계획 달성률	
	계획	실제	계획	실제	면적	생산량
1997	-	36.4	-	166.3	-	-
1998	35.5	35.8	153.7	148.9	100.96	96.90
1999	32.6	35.3	147.0	155.9	108.32	106.03
2000	35.5	34.0	158.0	154.0	95.76	97.48
2001	34.5	33.2	154.0	139.6	96.28	90.67
2002	30.0	30.7	136.0	146.1	102.35	107.40
2003	30.0	27.2	136.0	133.8	90.71	98.40
2004	26.4		118.0			

표 5. 수매방식별 수매가격 및 수량

구분	수매가격(元/kg)	수매량(kg/ha)	
		1기작	2기작
계획수매	자포니카 21 인 디 카 20	1,920	1,440
보도수매	자포니카 18 인 디 카 17	1,200	800

## 제3장

# 대만 쌀 시장 개방 과정

## 1. WTO 가입 협상 과정과 내용

- 대만은 2002년 1월 1일자로 WTO에 가입하고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 1990년 가입신청을 한 이후, 그동안 가맹국과 양자 간 협상을 완료하고, 또 1999년 5월까지 WTO 작업반회의에서 대만의 가입조건에 관한 다자간 교섭도 거의 완료하였으나 중국의 가입 협상 타결이 늦어져 대만의 WTO 가입이 지연되었다.
  - WTO 작업반회의에서 2001년 9월 18일 가입합의를 받아 11월 11일 카타르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보다 1일 늦게 가입의정서가 승인되었다. 그 후 11월 16일 가입의정서를 대만 입법원에서 비준을 받아, 이를 12월 2일 WTO 사무국에서 기탁한 후 30일이 경과된 2002년 1월 1일자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 2. WTO 가입조건

- 대만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선진국 대우를 받아 농림수산분야에서의 관세 인하 및 쌀의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비해 대폭 개방하게 되었다.

- WTO 가입 후 가장 민감한 농산물과 일부 축산물은 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되기 때문에 농가의 전업문제는 앞담배, 바나나, 사탕수수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에 이르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 가장 안정되어 있던 쌀 농가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의 특례조치를 적용하였다. 그동안 수량 설정을 둘러싸고 가입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02년도 수입량은 국내 수요량의 8%에 상당한 144,720톤을 수입하기로 결정되었다.
- 현재, 수입할당제도 등에 의해 수입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 또는 관세할당제도로 이행한다.

## 2.1. 쌀은 관세화 특례조치 적용

- 대만은 쌀 수입에 대해 관세화 특례조치를 적용하며, MMA 수량은 2002년에 144,720톤으로 하며, 그 후에 대해서는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접근기회는 관세할당으로 설정하고, 할당내 세율은 0으로 하고 있다.
- 수입체제는 국영무역을 계속 유지하며, 신규로 농가에 의한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무역의 범위는 할당수량의 35%로 하고, 마크업(Mark-up)은 상한(쌀 23.26元/kg, 가공품 25.59元/kg)을 설정하고,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한을 3元 이상 인하하기로 약속하였다.

## 2.2. 기타 수입제한 품목

- 쌀 이외의 수입제한 품목은 관세할당 또는 자유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6. WTO 가입 후 관세할당으로 이행하는 품목

품 목	할당 내 세율				할당 외 세율	
	가입 연차		2004년		가입연차	2004
	접근물량 (톤)	적용세율	접근물량 (톤)	적용세율		
낙화생	2,618	25%	5,235	25%	껍질안간 것:49元/kg 껍질간것:75元/kg 땅콩유: 398%	42元/kg 64元/kg 338%
동양배	4,900	18%	9,800	18%	58元/kg	49元/kg
설탕	120,000	12.5~17.5%	205,000	12.5~17.5%	168%	143%
마늘	1,844	종묘용 0% 식용 22.5%	3,520	0% 22.5%	0% 32元/kg	0% 27元/kg
빵량	4,412	17.5%	8,824	17.5%	950元/kg	810元/kg
닭고기	19,163	25%	45,990	20%	다리, 가슴날개64元/kg 기타 40元/kg	54元/kg 34元/kg
쇠고기	10,649	15%	21,298	15%	18.4元/kg	15.6元/kg
동물내장	돼지내장 10,000	25%	27,500	15%	310%	256%
	닭내장 1,836.3	25%	3,672.6	25%	400%	340%
돼지안심	6,610	15%	15,400	12.5%	60%	50%
녹각	1.5	22.5%	5	22.5%	800%	500%
팥	1,500	22.5%	2,500	22.5%	26~27元/kg	22元/kg
건표고	115	110元/kg 또는 25%	288	110元/kg 또는 25%	434元/kg	369元/kg
야자	1,720	25%	4,300	25%	216%	184%
건조 감귤류	110	15%	330	15%	103元/kg	88元/kg
야자	8,000	0.9元/kg 또는 15%	10,000	0.9元/kg 또는 15%	161%	120%
바나나	5,335	12.5%	13,338	12.5%	134%	100%
파인애플	9,548	15%	23,870	15%	204%	173%
망고	5,120	25%	12,755	25%	71%	60%
감	576	25%	1,440	25%	144%	122%
백합근	40	22.5%	101	22.5%	68元/kg	58元/kg
고등어	4,522.5	6.2元/kg 또는 20%	7,537.5	6.2元/kg 또는 20%	101%	86%
전갱이	1,308	25%	3,271	25%	106%	90%
정어리	1,906.5	38.1元/kg 또는 20%	3,813	38.1元/kg 또는 20%	70%	60%

주: 상기품목 중 닭고기, 돼지내장, 돼지 안심은 2005년 1월, 감, 고등어, 전갱이 및 정어리는 가입 후 6년에 각각 관세할당제를 폐지한다. 또 설탕은 국영무역으로 하되, 일부를 민간에게 할당한다.

자료: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표 7. WTO 가입 후 관세화 품목

품 목	현행세율	WTO 가입 후 세율	
		가입연차	2002
감귤류	10%	20%	17%
레이시	10%	20%	17%
감자	25%, 15%	22.5%, 0%	20%, 0%
오렌지	50%(3~9월 25%)	40%(25%)	30% (20%)
레몬	50%(1~9월 25%)	40%(20%)	30% (15%)
그рей프 후르츠	50%(1~9월 25%)	40%(20%)	30% (15%)
포도	42.5%	35%	20%
복숭아	50%	40%	20%
자두	35%	35%	20%
사과	50%	40%	20%
파파야	50%	35%	25%
기타 중국감귤	50%	40%	30% 또는 35%
기타 감귤	50%	42.5%	42.5%
오리고기	35 또는 40%	35 또는 40%	35 또는 40%
생오리	35 또는 40%	35 또는 40%	30 또는 34%
칠면조	10%, 10%, 20%	10%, 10%, 20%	10%, 8.5%, 15%
구아바	50%	40%	35%
오징어	42.5%, 15元/kg, 219元/kg 또는 50%	40%, 15元/kg, 219元/kg 또는 50%	40%, 15元/kg, 219元/kg 또는 50%

자료: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 대만은 WTO 정식 회원국이 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WTO 가입 후 국제적으로 승인된 수입규칙 체계를 도입하고, 그 중에는 쌀은 수입제한조치, 22개 품목의 농산물은 관세할당제도(customs quota system), 그리고 신축적 수입관세제도(a system of flexible import duties)를 포함하고 있다.

### 3. WTO 가입에 따른 쌀 시장 개방 내용

#### 3.1. WTO 가입협상 과정과 주요 쟁점 및 타결안 분석

##### 3.1.1. 쌀 MMA에 대한 국내관리 조건

- 국영무역과 민간무역이 왜 65:35로 설정되었는가?
  -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른다.
  - 협상 초기에 미국은 국영 비율이 낮고 민간 비율이 높게 설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국영비율을 높게 하고 민간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 정부 수입 쌀 가운데 미국 쌀 비중이 높고,
    - 대만정부가 미국에 협조적(우호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 정부미 처리 방식에서도 단서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단, 국영과 민간 수입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미국과 협상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 쌀의 방출 기한은?
  - 쌀이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방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부패 등 변질로 인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정부가 수입하는 쌀은 외국 수출, 원조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정부 재고 쌀을 처리함에 있어 양곡상이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반드시 수출하도록 하는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3.1.2. SBS 현황

- 민간 수입부분 35%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관여치 않는다.
- 수입권을 경매방식으로 이양한 후 완전 자율에 맡긴다.
  - 쌀수입할당권리금(稻米進口配額權利金)
  - 권리금은 kg당 평균 10~15元
  - 상인 1인당 쿼터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 수익을 적게 내려는 상인이 수입권 획득에 유리하다.
  - 수입권 획득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양곡상의 쿼터가 충족될 때까지이다.

### 3.1.3. 마크업 계산 방식과 크기

- 2002년 마크업(Mark-up): 쌀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1990-1992)
  - 국내가격은 장립 찰쌀 도매가격 : 31.54元/kg
  - 국제가격은 수입한 태국산 장립 찰쌀 평균가격 : 8.28元/kg
  - Mark-up:  $31.54 - 8.28 = 23.26$ 元/kg

표 8. 기준 연도 쌀 가격과 Mark-up

			위안/kg
연도	국내가격	수입가격	Mark-up
1990	38.01	7.60	30.41
1991	29.61	8.38	21.23
1992	26.99	9.00	17.99
평균	31.54	8.28	23.26

자료: 대만행정원 농업위원회.

- 2003년 Auction
  - 권리금(Premium)을 가장 높게 제시한 사람에게 쌀 수입권을 부여한다.
  - SBS의 경우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사람에게 낙찰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

### 3.2. 가입안의 주요 내용

- 대만의 WTO 가입의정서 내용 가운데 쌀 시장 개방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관세화유예 방식으로 기준 연도 국내 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144,720 톤의 현미를 수입해야 함은 물론, 그 중 65%(94,068톤)는 정부 수입이고 나머지 35%(50,652톤)는 민간 수입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 쌀 할당관리:
  - 정부비축쌀의 산업용 또는 식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통경로에 진입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다.
  - 재수출용 쌀 수입은 쿼터제도하에서 수입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 WTO 가입에 따라 쌀 수입 금지를 철회하고 현미 기준으로 계산된 부속서 5의 문항에 따라 쿼터를 설정한다. 이 쿼터량은 2002년에는 144,720톤으로 설정한다.
  - 12월 31일까지 민간무역업자를 통해 이행되지 않은 쿼터분은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정부가 수입한다.
  - 2002년 이후의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 전환은 농업협정 부속서 5, 특히 3, 4 번째 단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추가적인 쿼터 증량은 농업협정문 제20조항에 따라 처리된 협상에 관한 WTO 회원국가들이 약속한 것과 일치하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 정부 수입:

- 수입 쌀의 명세서: 중앙정부의 쌀 수입은 쌀 교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수입 쌀의 처분: 수입 쌀은 국내에서 생산된 쌀보다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된다. 수입 쌀은 쌀 마케팅, 유통경로, 도매상, 판매자 그리고 최종 수요자에 대해 완전한 접근이 허용된다. 수입 쌀의 가격은 국내산 쌀과 경쟁 가능한 가격으로의 국내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다. 수입 쌀은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판매됨으로써 실제 식탁 위에 도달했을 때의 품질이 보관 기간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수입 쌀은 가축용 사료로 사용되거나 식량원조의 용도로 수출하지 않는다.

○ 민간수입:

- 직접적인 민간무역: 민간 쌀 수입을 위한 쿼터제도는 직접 민간 부문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쿼터제도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쿼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수입 쌀은 국내에서 생산된 쌀보다 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국내 도매 또는 소매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농업협정문 Section A의 부속서 5에 의거하여 민간무역업자에게 할당된 시장접근물량 비율을 35%까지 증가시킨다.
- 교역조건: 쿼터할당 증명서는 수입허가절차 및 GATT 1994의 제 8항에 따라 자동적인 수입허가로 사용된다. 제품 명세서, 원산지, 가격, 포장 등을 포함한 모든 교역 조건은 거래 관련 당사자들의 유일한 판단기준이 된다. 단일 할당 시 부분선적은 용인된다. 무역업자는 대만(Chinese Taipei)의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것처럼 동일한 쿼터에 대해서 모든 제품이나 제품 혼합물을 수입하게 된다. 쿼터이내의 모든 수입물품은 추가적인 무역에 관한 제한 없이 대만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이 인정된다. 모든 할당 증명서는 자

유롭게 이전 및 교환 가능하고, 증명서를 보유한 자는 할당을 합치거나 나누기 위해 재발급 된 증명서를 받는다.

- 신청: 모든 쿼터량 할당 신청서는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에 제출되어야 한다. 매년 첫 번째 쿼터 할당신청을 위한 특정조건은 신청기간 시작 60일전에 공공 간행물에 발표한다. 가입 시기가 첫째 계획서상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첫 분배 신청 기간은 이전 연도의 9월 30일에 마감된다. 재할당 신청기간은 9월 1일에 마감된다. 농업위원회는 할당을 승인하고 발표한 후 신청기간 마감 2주 이내에 할당받은 곳의 이름과 할당수량을 통보해야 한다.
- 관련 비용: 할당 과정과 관련한 어떤 또는 모든 비용, 공탁금, 관세 등은 명백히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고, 대만의 계획서에서 나타나 있듯이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관세 그리고/또는 기타 세금 등의 예외가 인정된다. 특별한 실적이나 입찰보증금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 할당:

- 초기 할당 배분: 초기 할당증명서는 선착순 방식으로 발급한다. 할당은 통상적으로 선적 가능한 수량에 대해 설정되나 특정 할당의 범위에 최고한도는 사전에 이루어지고 할당통보절차의 일부분으로서 발표된다. 할당 증명서는 1월 1일과 9월 1일 사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된다. 도착일은 현재 발표중인 대만 관세법의 이행규정 제5항에 따라 결정된다. 9월 1일 이전에 서명 계약된 증거가 있거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업위원회가 12월 31일 또는 그 전에 도착된 물품을 위해 증명서의 유효날짜를 자동으로 연장한다.
- 미사용 할당량의 재 할당: 만약 특정 연도에 쿼터 할당 증명서를 보유한 자가 9월 1일까지 보유한 총할당분에 대해 수입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할당분은 선착순 방식으로 재 할당한다. 재할당증명서는 90일간 유효하게 된다.

표 9. 대만의 쌀과 쌀 제품 수입관세율 및 조건

품목	관세품목 번호	초기쿼터량 및 쿼터 내 관세율	최후 쿼터량 및 쿼터 내 관세율	이행 기간	초기 협상권	기타 조건
부속서 5		144,720톤	144,720톤	가입후 5년		중양정부 수입: HS제10류(HS Chapter10)에서 쌀의 관세율은 0%이다. 개별 수입과 재판매에 대한 부과금과 마크업 및 기타 비용의 총액은 쌀인 경우 23.26 위안(元)/kg, 쌀 가공품인 경우 25.59 위안/kg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주어진 가격으로 수입 쌀이 국내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할 경우, 대만은 시장청산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2주안에 가격을 3 위안/kg 혹은 그 이상으로 인하하여 재공시할 것이다. 국가 재고에서 방출할 때 필요한 경우 이 과정은 반복될 수 있다.
쌀		<b>144,720톤</b>	<b>144,720톤</b>			
-벼	10061000	없음	없음			민간수입: 관세와 마크업: 쌀의 쿼터 내 관세율은 HS제10류(HS Chapter10) 기준 0%이다. 개별 수입에 대한 부과금, 마크업 및 기타 비용의 총액은 쌀인 경우 23.26위안/kg, 쌀 가공품인 경우 25.59위안/kg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최초 공시 이후 쿼터량이 미소진될 경우, 대만은 수입제한을 하지 않고, 시장청산 수준 이상으로 수입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과금과 마크업 및 기타 비용의 합을 3위안/kg 혹은 그 이상 인하하여 재공시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이 과정은 반복될 수 있다. 만약 개시 입찰이 초과될 경우, 선착순으로 할당한다.
-찰현미	10062000	없음	없음			
-찰쌀	10063000	없음	없음			
-쇄미	10064000	없음	없음			
쌀가루						
-찰쌀가루	11023010	20%	20%			
-기타 쌀가루	11023090	25%	25%			
분쇄물, 조분	11031400	없음	없음			
	11032910	25%	25%			
압착 플레이크	11041910	20%	20%			
기타 조제 쌀	11042920	20%	20%			
녹말	11081910	15%	15%			
볶은 쌀						
-볶은 쌀	18069071	20%	20%			
	19023020	20%	20%			
	19041020	20%	20%			
	19042011	20%	20%			
	19042021	20%	20%			
-기타	19021110	20%	20%			
	19021910	20%	20%			
	19022010	20%	20%			
쌀제품						
-곡물형태 조제	18069061	30%	20%			
	19049010	30%	20%			
-기타	18069092	25%	25%			
	19019091	25%	25%			
	21069098	30%	20%			

자료: 대만행정원 농업위원회.

## 4. 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 과정

### 4.1. 관세화 논의의 배경과 내용

#### 4.1.1. 관세화 전환 배경

- 대만은 WTO 가입 후 1년 이내(2002년 말까지)에 반드시 관련회원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 한 추가적 양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그리고 대만은 선진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였으므로 WTO농업협정 특별취급조항 A항의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만약 대만이 관세화유예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관련회원국들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TRQ 물량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며, 쌀 시장 개방 확대 요구는 앞으로도 더욱더 가중되어 협상압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대만 정부는 쌀 수입을 관세화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대만 정부는 관세화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할 경우 MMA가 해마다 0.8%씩 증량하는 것이 불가피해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GATT 제28조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대만은 관세화 전환 3개월 전인 2002년 9월 30일 WTO에 쌀 수입에서의 관세화 채택을 통보하였으며,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한편 대만의 쌀 관세화는 「세관수입세칙」 및 「식량관리법」 수정안에 법적 근거를 두어 2002년 12월 27일에 입법원(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령에 의해 동년 12월 31일에 공포·시행되었다.

- 그러나 쌀 관세화 실시 시점인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어떤 나라와도 양자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을 포함하는 WTO 통보(CS 수정안)에 대하여 미국, 호주, 태국 등 3개국이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 그동안 미국과는 한 차례 협상이 있었으며, 호주와 태국도 쌀 관세화와 관련하여 협상을 정식 요청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만의 CS 수정안이 발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또 2003년 5월 2일에는 SSG를 발동하여 12월 말까지 추가관세(33% 인상)를 부과한 바 있다.
- 쌀 관세화 전환을 위한 국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행정부(농업위원회, 경제부 등)가 두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일본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관계법령 수정을 위한 입법부와 협의 등은 있었으나, 농민단체나 식량업체 등 민간부문과는 특정의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는 없었다.

#### 4.1.2. 쌀 관세화 내용

- 정부비축쌀의 산업용 또는 식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통경로에 진입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으며, 재수출용 쌀 수입은 쿼터 제도 하에서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현미 기준으로 관세할당제를 설정하며, 이 쿼터량은 2003년부터 매년 144,720톤으로 유지되어진다.
- 정부 수입
  - 수입 쌀의 명세서: 중앙정부의 쌀 수입은 쌀 교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 수입 비율은 65%이다.

- 민간 수입
  - 민간수입 비율은 전체 수입량의 35%로 한다.

#### 4.2. 관세상당치(TE)의 계산

- 부속서 5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쌀에 대한 관세상당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실질적 차이를 이용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다.
- 사용된 자료는 타이완(臺灣), 평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의 별도 관세영역 접근에 대한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의 175항을 준수하여 1986~1988년도 수치 대신 1990년~1992년도 수치이다.

표 10. 쌀의 관세상당치

단위: NT\$/kg

연도	국내가격	국제가격	관세상당치
	(a)	(b)	(a)-(b)
1990	61.58	7.60	53.97
1991	61.68	8.38	53.29
1992	59.41	9.00	50.41
평균	60.89	8.28	52.61

자료: 대만행정원 농어위원회.

- 국내가격은 국내시장을 주도하는 도매가격으로 하며,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브랜드쌀의 도매가격을 국내시장 대표 도매가격으로 삼는다.
- 브랜드 쌀의 국내 소비 점유율은 1999년 기준 43%이다.

표 11. 브랜드 쌀 가격과 도매가격지수

연 도	월평균 최고가격 (1)	월평균 최소가격 (2)	$\{(1)+(2)\}/2$	도매가격 지수(e)	산정치 (c)×(e)/(d)
1990	-	-		93.09	61.58
1991	-	-		93.24	61.68
1992	-	-		89.82	59.41
1999	95.56	24.80	60.18	95.58	
2000	100.05	25.18	62.62	97.32	
2001	110.00	26.59	68.30	96.02	
평균 (1999-2001)	101.87	25.52	63.70 (c)	96.30 (d)	

자료: Taiwan Food Statistics Book.

- 국제가격은 수입국에 대한 실질 평균 CIF 단가이다.

표 12. 쌀의 실제 수입량(HS10006)

연도	수입량(1,000kg)	수입액(NT\$1,000)	평균CIF(NT\$/kg)
1990	1,560	11,857	7.60
1991	1,591	13,327	8.38
1992	1,285	11,561	9.00
평균	1,479	12,248	8.28

자료: Monthly Statistics of Imports, 중화민국, 대만지역.

- 부속서 5의 6항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쿼터 외 관세율은 다음과 같은 관세상당치를 근거로 삼아 산출되었다. 이 관세율은 이행기간에 적용된 최소 15% 감축이 적용된 것이다.

YR2003 NT\$44.7/kg (NT\$52.61/kg×0.85)

- 쌀 제품에 대한 관세상당치
  - 쌀에 대한 관세상당치는 쌀의 특정 관세상당치와 변환율을 곱하여 산정

$$\text{NT\$}52.61 \times 1.1 = \text{NT\$}57.87 \quad \text{변환율: 1.1}$$

- 쌀 제품에 적용되는 쿼터 외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text{YR2003 NT\$}49.1/\text{kg} \quad (= \text{NT\$}57.87/\text{kg} \times 0.85)$$

### 4.3. 검증과정

- TE 관련 검증 절차
  - 이의 제기 국가 : 미국, 호주, 태국
  - 이의 제기 내용 :
    - 미국은 TE 계산에서 적용된 국내 쌀 가격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단순평균치가 아니라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 3국 모두 kg당 45위안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호주는 대만의 SSG 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국가할당(Country Specific Quota), 즉 국영무역의 국가별 비중 고정화를 주장하였다.
  - 대만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대만 정부는 관련 업무는 WTO 규정에 입각하여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국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제4장

# 대만 쌀 시장 개방 영향

### 1. 국내 쌀 수급 변화

-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매년 외국으로부터 국내 총소비량의 약 12%에 달하는 쌀이 수입되고, 국민의 쌀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쌀 생산을 줄이려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쌀 생산은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03년 기준으로 벼 재배면적은 30만ha까지 감소하였으며, 전체 논 면적 43만 3천ha의 30%에 해당하는 논이 휴경되고 있다.
  - 2002년까지만 해도 대만은 매년 1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출해 왔으나 2003년에는 쌀 수출량이 급감하여 7천 톤에 그쳤다.
  
- 대만은 쌀 시장개방 이전에 태국으로부터 3,000톤에서 5,000톤 정도의 쌀을 수입하고 있었다. 대만은 WTO 가입의정서의 쌀 시장 개방 내용에 의거 2002년에는 의무수입물량인 144,720톤이 전량 수입되었다(실제수입량은 144,732톤). 2003년은 TRQ 수입이 144,649톤이었고, TRQ 이외 수입은 고관세로 인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국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정부수입은 관세화유예 시기인 2002년의 경우 미국과 호주 2개국으로부터만 수입되었으나 관세화로 전환한 2003년에는 이 두 나라 외에 태국과 이집트로부터도 수입이 이루어졌다. 민간수입은 2002년에 미국, 태국, 호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고, 2003년에는 이집트가 추가되었다.
  - 국별 수입물량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수입은 미국산이 2002년과 2003년 2년 모두 74.5%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화 전환 이후인 2003년의 민간수입은 태국(61.4%), 이집트(28.2%), 미국(9.2%), 일본(0.6%), 호주(0.5%) 등의 순이다.
- 대만 쌀 수입의 특징은 고급미(일본, 호주, 미국)와 저급미(태국, 이집트)가 모두 수입된다는 점이다. 또한 태국산은 고급 향미가 수입되고, 이집트산은 저급쌀이 정부와 민간수입 포함하여 16.8%가 수입되고 있다.
- 쌀 수입가격은 수입 국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본산이 톤당 3,286달러로 가장 높은 가격이고, 다음으로 호주산 471달러, 미국산 341달러, 이집트산 303달러, 태국산이 302달러 등이다.

표 13. WTO 가입 후 대만 쌀 수급 현황

단위: ha,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현미)	수입량	수출량	재고량
2002	307,037	1,460,670	144,732	107,254	565,000
2003	300,000	1,338,287	144,649	6,983	756,000

자료: 농업통계연보.

표 14. 대만의 WTO 가입 후 국가별 쌀 수입량, 2002-03년

단위: 톤, 현미

		미국	태국	호주	이집트	일본	기타	합계
2002	정부수입	70,068 (74.5)	-	24,000 (25.5)	-			94,068 (100.0)
	민간수입	29,279 (57.8)	18,362 (36.2)	2,244 (4.4)	-	332 (0.7)	447 (0.9)	50,664 (100.0)
	합계	99,347 (68.6)	18,362 (12.7)	26,244 (18.1)	-	332 (0.2)	447 (0.3)	144,732 (100.0)
2003	정부수입	70,068 (74.5)	6,000 (6.4)	8,000 (8.5)	10,000 (10.6)	-		94,067 (100.0)
	민간수입	4,676 (9.2)	31,056 (61.4)	268 (0.5)	14,265 (28.2)	298 (0.6)	18 (0.0)	50,581 (100.0)
	합계	74,744 (51.7)	37,056 (25.6)	8,268 (5.7)	24,265 (16.8)	298 (0.2)	18 (0.0)	144,649 (100.0)
2004	합계	40,159	26,499	7,204	24,921	316	859	99,958

주: MMA 또는 TRQ 수입량임.

자료: 대만행정원 농업위원회.

## 2. 수입 쌀의 국내 유통 및 판매

### 2.1. 대만 쌀 수입의 특징

- 대만은 WTO 가입 조건으로 MMA 또는 TRQ 수입비에 대해 몇 가지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 즉, 수입 쌀 처분방식에 대한 제약으로 수입 쌀은 대외 원조용과 사료용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시기에 방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수입 쌀을 시장에서 완전 격리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쌀 수입이 비교적 고급 쌀 위주로 이루어졌고, 게다가 수입 쌀은 수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국내 소비시장에 방출됨에 따라 국내 쌀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현재 대만 쌀 소비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쌀의 대부분은 저급 쌀이거나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등으로 인하여 대만 소비자를 크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품질 저하로 음식점 등에서도 수입 쌀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지조사 결과 대만 소비자들은 국내산 고품질 쌀을 수입 고가미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일본산 고시히카리가 kg당 250위안(한화 9천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대만산 고품질 쌀 브랜드인 지상미(池上米)는 이보다 훨씬 비싼 300위안(1만8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 2.2. 쌀 수입 및 방출

- 정부부분: 2002년 4회, 2003년 8회, 2004년 5회(진행중)에 걸쳐 수입
- 민간부분: 2002년분의 경우 11월, 이듬해 1월 및 4월의 3차에 걸쳐 수입권을 경매 처분하였다.
- 정부 수입 쌀의 방출
  - 국영수입쌀의 방출 시점은 국내 수급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 판매 방식은 90%이상의 물량은 양상을 대상으로 공고 후 판매한다. 단, 국내산 쌀 수확기에는 방출물량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비수확기에 방출한다.
  - 정부 수입 쌀은 대부분 일반 소비시장에 방출되나, 일부는 학교급 식용 등 공공기관에도 분배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식용 위주의 용도로 사용된다. 수입 쌀 가운데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양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기타 일부는 사회구제용(빈곤가정구제 등)으로도 방출한다.

- 원칙적으로 수입 쌀은 수입 후 1년 내에 처리한다.
  - 2002년 수입분 전량 판매 완료, 2003년 수입물량은 방출 중에 있다.
-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정부수입 쌀의 경우 처리 후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 쌀 수입업자는 대부분 쌀 수입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부 수입 쌀의 판매가격은 수입가격에 직접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 3. 쌀 가격 추이

- 국내 쌀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WTO 가입 이전인 2001년말까지는 벼 생산자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지 않았으나, WTO 가입으로 쌀 시장을 개방한 2002년부터는 생산자가격이 생산비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특히 2003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수입한 쌀이 국내 시장에 방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상들이 정부 수입 쌀 대량 방출을 예상하고 수확기에 생산자들로부터 벼를 매수하지 않자 2기작 쌀 수확 직후인 10월에 벼 산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 2003년 10월의 쌀(조곡) 가격은 15.06위안/kg으로 하락하여 가격 안정조치의 발동 제한선(15.2위안/kg)이하로 떨어졌다.
  - 쌀값이 생산비까지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은 양곡상이 정부 창고에 수입 쌀을 포함한 재고가 많아 저가로 시장에 방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확기에 생산자들로부터 쌀을 사들이지 않자 시장가격이 급락하게 되었다. 즉 상인들의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03년 2기작 쌀 수확 후, 대만의 쌀 상인들은 정부의 식량재고가 늘어나고 TRQ 수입물량의 65%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고미를 저가로 시장에 방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쌀의 상당 부분을 처분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림 3. 대만의 중단립종 벼 생산자가격, 20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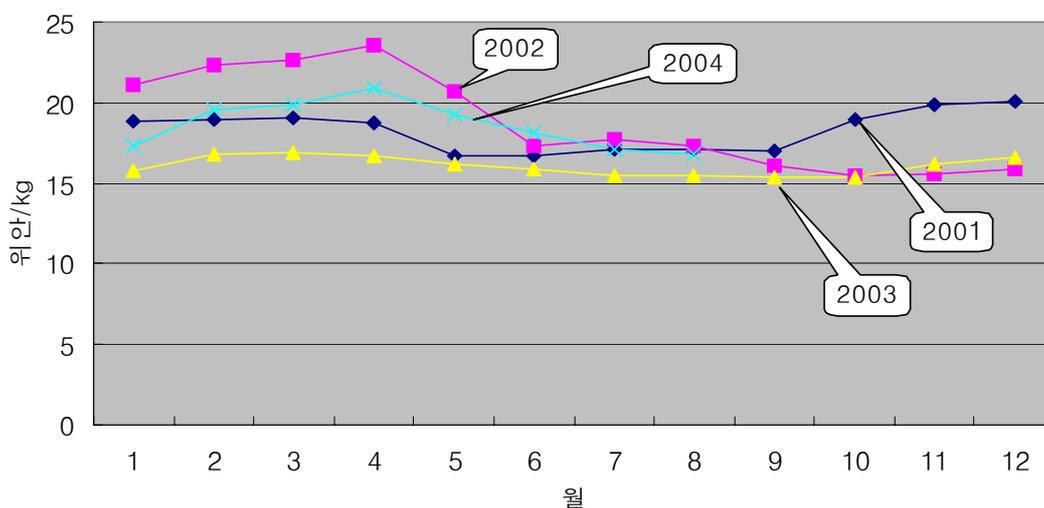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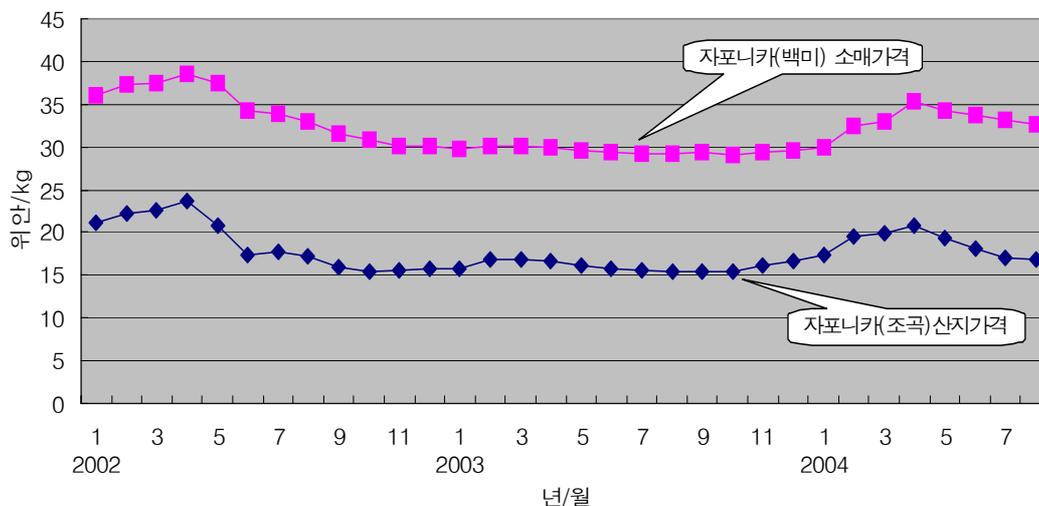


그림 4. 대만의 중단립종 쌀 가격 추이, 2002. 1~2004. 8



- 쌀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은 2기작 수확기인 10월을 전후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듯하다.

## 4. 국내 쌀 관련 정책의 변화

### 4.1. 생산조정전략

#### 4.1.1. 벼 생산면적 감소조정

- 해마다 최소 14만 7천여 톤의 쌀 수입과 더불어 국내 소비량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벼 생산면적은 반드시 감소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02년~2004년의 벼 면적 목표는 30만ha로 정해졌다. 감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일반 윤작과 휴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편 추가적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2기작 벼를 대상으로 연도별, 지역별로 교대로 휴경을 실시하고 있다.

표 15. 계획생산의 윤작, 휴경 및 교대식 휴경 조치의 장려기준

단위: 위안/ha/기작

	항목	지급금액 (위안)	비고
직접 지불	1. 녹비재배 및 생태보호보조 (1, 2기작)	41,000	녹비종자 및 전간작업관리 등 비용 포함
	2. 휴경지번정보조(2기작에 한함)	34,000	휴경지의 2기작은 경운 혹은 녹비재배 선택
	3. 2기작 윤작휴경지 녹비재배보조 (2기작은 3년으로 나누어 윤휴를 실시하고, 연별 윤휴지는 각 현시 (縣市)급 정부가 계획함)	46,000	(윤작과 휴경 해당 기작에 한함)
윤작 장려	1. 윤작지역 특산작물 및 기타작물 장려	22,000	윤작작물의 종류 및 관련 규정은 『2003년도 논밭이용 조정후속계획선도중점』참조
	2. 집단 윤작지역 특산작물 및 기타 작물 장려	26,000	

#### 4.1.2. 벼 생산판매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농민이 재배 계획 및 조정을 함에 있어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벼 생육 상황, 재배면적, 생산량 예측, 국내외 곡물가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 4.1.3. 국산쌀 품질 제고

- 양질품종의 벼 재배: 각 시험개량지는 양질의 벼 품종을 육성하여 육묘센터에게 선육, 번식 등을 추천 지도하고, 농민에게는 재배 및 전간관리에 관한 방법을 지도한다.
- 유기쌀 생산 독려: 집단재배지역 및 판매 팀의 구성, 농업개량장의 재배관리기술지도, 공신력 있는 검증센터 건립을 통해 유기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 국내 쌀 시장 개방을 계기로 1985년부터 추진된 양질미 생산 확대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양질미 육종 및 번식 갱신, 육묘센터를 통해 적지 적재의 양질 품종 배양 및 갱신 보급을 가속화한다.
  - 집단지역 계획을 통해 양질미의 적정지역에 재배할 추천 품종을 지도하고, 다시 양질미 재배 및 건조 방법 생산 조제에 의거하여 전간 검사, 등급 분류 검사 및 품질 경쟁을 실시하며 국산 벼 재배관리기술과 품질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 전업 벼 재배농으로 구성된 유기쌀 집단 재배지역 및 유기쌀 생산 판매팀을 지도하고, 농업개량장이 개선 및 재배관리기술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사항을 지도한다. 동시에 생산 판매팀을 지도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검증 및 유기쌀 판매처 검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유기쌀 생산품 품질을 확보하게 한다. 2000년까지 이미 유기쌀

생산판매반이 25개 성립되었으며 연 재배 면적은 1천여 ha에 달한다. 생산된 소포장 쌀 판매가는 일반 백미가의 약 2배보다 높다.

표 16. 양질미 생산 지도 계획 신청 면적

연도	작기	총 재배면적	양질미 신청 면적	점유율(%)
2000	1기	195,057	21,800	11.18
	2기	144,892	22,150	15.29
2001	1기	188,588	28,950	15.35
	2기	145,348	24,900	17.13
2002	1기	178,081	29,303	16.45
	2기	128,956	21,384	16.58
2003	1기	179,000	40,800	22.79
	2기	121,000	24,980	20.64

주: 1998년 제1기작까지는 양질미 계약재배를 실시하였으나 1998년 제2기작 이후로 계약재배는 실시하지 않고 다만 육묘센터를 통해 보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4.1.4. 생산비 절감

- 벼 면적 조정 및 녹비(綠肥) 집단재배 보급을 위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 육묘센터 혹은 대리경작센터를 지도하여 소농이나 겸업농의 위탁을 받아 전문적으로 벼 혹은 대리경작센터로 경영한다.

## 4.2. 가격안정조치

- 벼 수매 강화
  - 곡물가격보호, 농민 수익 확보를 위해 보증가격수매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벼 수확기에 수매작업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벼 유통량을 줄인다. 보호가격수매는 WTO 규범에서 삭감되어야

하는 보조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뉴라운드 농업규범과 향후 조화시켜 검토와 조정을 거쳐 국제 규범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 농회 및 곡물상에게 벼 수매를 위한 대출금을 제공하고 있다. 2003년 대출금 총액은 7억 위안이고, 연이율은 2.5%이다.
- 농민이 수확한 벼를 임시로 공공식량창고에 저장하도록 장려하여 시장 유통량을 조절한다.
- 여량수매(餘糧收購)제도 도입
  - 정부가 직접 수매(여량수매)에 나서자 쌀값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당초 10만 톤 이상을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수매량 보다 아주 적은 양을 수매하자 곧 바로 쌀값이 15위안대에서 17~18위안대로 상승하였다.
  - 2003년 2기작에 대한 수매실적은 25,000톤(수매가격은 자포니카 16.6위안, 인디카 15.6위안), 2004년 1기작에 대한 현재까지의 여량수매실적은 약 2,000 톤에 불과하다.
  - 여량수매 역시 1ha당 2,360kg의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나 2기작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 보증가격수매량이 ha당 2,240kg(계획수매 1,440kg, 보도수매 800kg)이므로 이를 합하면 ha당 4,600kg을 정부가 수매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의 전량 수매라고 볼 수 있다.
  - 여량수매에 사용된 자금의 재원은 『농산물 수입피해구제기금』이다.

※ 95계획(九五計劃) 수립:

- 쌀 이외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의 95%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비의 95%의 가격으로 수매한다는 정책 조치
- 쌀 이외의 농산물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었으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지 않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킴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 할 수 있음.

표 17. 쌀 여량수매 실시 기준 및 집행 실적

적용기준	수매가격 (위안/kg)	수매한도 (kg/ha)	집행 실적
생산자(산지)가격이 1999~2001년 3년간 평균생산비인 15.2위안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자포니카 16.6 인 디 카 15.6	1기작 2,000 2기작 1,500	2003년 2기작 25,000톤 2004년 1기작 2,000톤

주: 2003년 2기작과 2004년 1기작의 수매가격은 동일함.

### 4.3. 유통조절조치

#### 4.3.1. 쌀 등급제도 및 브랜드 제도 건립

- 정부인증을 거친 브랜드 쌀 품질을 선도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산 양질미 구매를 유도하고, 쌀 등급 질서를 건립한다.
- 곡물상이 CAS 양질미인증처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곡물상이 「대만 호미(臺灣好米)」 공동표지를 이용하여 판매하도록 지도하여 「좋은 쌀은 좋은 가격으로 판매(好米賣好價)」 목표를 달성한다.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용 쌀 포장표시 및 품질추출 검사를 강화하고 등급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질 좋고 특색을 갖춘 국산쌀 브랜드를 구축한다.

#### 4.3.2. 쌀 가공 부가가치 제고

- 전통 쌀, 제분 등 제품의 제조 절차 및 보존 기술을 개발한다.
- 식품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쌀 가공품 제조, 편리한 인스턴트 쌀제품의 연구개발 및 시장개발을 강화한다.

### 4.3.3. 쌀 유통경로 개선

- 현과 시 등 곡물상공회와 협조하여 벼 시장정보 및 판매사이트 건립하고, 택배·우편판매 혹은 인터넷 판매를 결합하여 쌀을 주문하고 배송한다.
- 지역 단위로 가공전략제휴를 구성하여 농업개량장이 양질의 종묘를 제공하고, 농민과 함께 전문 판매팀을 조직하여 공동 브랜드 및 유통경로를 구축한다.

### 4.3.4. 국내외 판매 정보의 수집 및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 4.4. 벼 수입관리조치

- 민간수입 쌀은 입찰관리금 방식으로 할당량을 배분하고, 수입 쌀과 국산쌀의 가격차를 축소 조정한다.
- 수입량이 기준 수량을 초과할 경우, 혹은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의 90%보다 낮을 경우 SSG를 발동하여 관세를 최고 1/3까지 높일 수 있다.
- 수입량의 65%는 정부가 나누어 수입하고, 납입공량을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시장으로 방출 시에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할증가 및 입찰시켜 대량방출이 국내 쌀 가격에 대한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 4.5. 국민의 쌀 소비량 안정

- 쌀 관련 교재 및 지도 자료의 발간을 통해 쌀 보급을 확대한다.
- 공공식량, CAS 및 일반 백미의 위생안전검사 처리를 강화한다.
- 시장판매 쌀 포장표시 및 품질의 추출검사를 강화한다.

## 제5장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1. 쌀협상에 관하여

- 대만의 쌀 시장 개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은 실패 또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지만 대만정부의 자체 평가는 성공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대만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WTO 회원국들의 무리한 요구를 선택의 여지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 불리한 조건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시행 결과 일시적인 쌀값 하락 현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별문제 없이 국내 쌀산업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쌀협상에 당면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과정과 내용, 그리고 최종 협상 타결 결과 등이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의 경우보다는 대만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쌀 시장 개방 방식(관세화 또는 관세화유예)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출국들의 부가 요구조건 여하가 국내 쌀 시장과 쌀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수입 쌀의 국내유통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대만의 쌀 시장개방 조건은 특별한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 즉, 수입 쌀 처분방식에 대한 제약으로 수입 쌀은 대외 원조용과 사료용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시기(부패 또는 변질되기 전)에 방출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 쌀을 국내시장에서 완전 격리하여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 쌀산업 보호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의 쌀협상 과정에서 수출국들이 수입 쌀의 국내 처분 때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특정의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대만 농업위원회 WTO 협상대표 조언).
- 관세상당치 계산에 사용된 자료는 WTO가 규정한 1986~1988년도 수치가 아니라 1990년~1992년도 수치를 사용하였으나(1986~88년도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 때문)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협상 과정에서 각종 수치계산 시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만의 경우 관세화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수출국에서 관세상당치 계산 방식이나 SSG 발동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나 대만정부의 입장은 당사국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설정과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관세화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에 걸쳐 수입 쌀 비중이 총소비량의 8%에 도달하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관세화 유예 방식을 유지하다가 10년 이후에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나 유예기간이 짧으면 오히려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대만 정부관계자의 견해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 2. 국내 대책에 관하여

- 우리나라 쌀 시장 추가 개방 초기에는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량수매제도’와 같은 수입피해구제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대만의 사례에서 이 제도는 쌀 생산 농가에 심리적인 안전감을 갖게 하는 효과와 함께, 적은 재정부담으로 신속한 쌀값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량수매에 사용된 자금의 재원은 『농산물 수입피해구제기금』이다.
- 대만은 정부 수입 쌀에 대해서는 대략 수입 후 1년 이내에 방출하고 있으나, 방출시점은 국내 수급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따라서 국내산 쌀 수확 직후에는 되도록 방출을 자제하고 대부분을 비수확기에 방출함으로써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쌀 수입 개방 이후 국내대책 수립에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쌀 시장 개방과 더불어 대만정부가 취하는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벼 재배면적 감축, 휴경 및 윤작제도 도입, 쌀 조기경보체계 구축, 국산 쌀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생산구조조정조치
  - 벼 수매업무 강화, 농회와 양곡업체에 대한 벼 수매자금 우대금리 용자, 농민이 생산한 벼에 대한 공공비축창고 저장을 장려하여 시장유통물량 조절, 여량수매 등의 가격안정조치

- 쌀 등급제 및 브랜드 제도 수립, 쌀 가공부가가치 제고, 쌀 유통 경로 개선,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기회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유통개선조치
  - 민간수입쌀에 대한 수입권 공매 방식 도입으로 수입 쌀과 국산쌀 간의 가격격차 축소, 쌀 수입량이 기준수량 초과했거나 또는 수입 쌀 가격이 기준가격의 90% 이하일 경우 즉시 SSG 발동을 통해 특별관세 부과, 정부수입쌀(전체의 65%)은 정부가 나누어 수입하여 공공식량으로 편입하여 일괄처리하고 방출할 경우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가격할증(Mark-up) 및 분할 판매함으로써 대량방출로 인한 국내시장가격 급락을 방지하는 등의 쌀 수입관리조치
  - 쌀 소비촉진, 쌀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시장 유통 쌀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식량안보 확보
- 이와 같은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쌀협상이 마무리되고, 쌀 시장이 추가개방될 경우 국내대책 수립을 위해 참고할 정책 내용들이므로 이들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부표 1. 대만 쌀 수출입 추이, 1989-93

단위: 천달러

연도	월	수입		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89	1	336.08	242.98	32,826.42	8,006.76
	2	309.43	153.56	710.44	943.01
	3	143.78	119.41	1,966.13	1,668.14
	4	245.74	197.10	1,368.12	1,429.50
	5	529.79	353.08	2,332.90	1,878.86
	6	180.23	216.65	1,255.03	1,465.90
	7	214.53	277.81	17,082.71	5,775.09
	8	314.76	288.37	4,210.98	2,285.21
	9	379.49	353.64	20,506.86	7,102.60
	10	292.19	389.37	1,602.95	1,720.00
	11	367.56	323.34	1,273.81	1,965.26
	12	326.08	322.16	1,676.54	1,607.51
1990	1	161.38	135.63	5,664.86	2,023.40
	2	406.18	382.93	1,827.86	1,384.86
	3	314.83	317.62	7,433.98	2,606.88
	4	314.09	350.93	11,039.62	3,352.42
	5	585.03	460.42	5,812.17	2,220.35
	6	277.31	253.23	1,685.98	1,285.69
	7	450.50	280.41	1,924.78	1,693.66
	8	450.80	384.85	961.54	1,319.32
	9	436.25	373.41	1,778.38	1,429.30
	10	587.38	538.77	1,765.38	1,654.96
	11	493.30	364.08	2,319.24	1,919.16
	12	615.59	393.36	54,402.14	10,418.73
1991	1	703.01	338.71	3,294.86	2,048.24
	2	346.91	168.93	4,019.82	1,732.45
	3	453.79	180.84	29,897.98	6,878.82
	4	497.70	261.97	18,417.26	7,251.50
	5	125.24	134.95	7,670.49	2,929.95
	6	369.38	321.68	28,304.26	6,884.58

## 부표 1. (계속)

연도	월	수입		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1	7	375.98	227.16	21,805.27	7,370.29
	8	325.09	276.50	7,322.05	2,649.64
	9	477.75	327.56	13,960.59	4,221.62
	10	481.66	343.97	21,949.12	6,091.26
	11	610.14	412.00	3,296.74	1,927.61
	12	425.81	2.78	4,285.54	24.26
1992	1	458.63	305.79	4,564.43	2,358.11
	2	204.25	186.55	20,004.50	4,583.04
	3	441.98	256.80	2,980.97	1,851.59
	4	342.35	220.65	13,167.87	4,037.64
	5	620.46	355.80	2,068.97	1,733.73
	6	493.82	319.78	21,745.97	5,782.80
	7	351.11	302.06	1,311.38	1,521.16
	8	613.36	476.18	16,880.57	4,539.92
	9	418.41	311.01	3,146.80	2,210.06
	10	530.83	404.94	11,855.32	4,473.57
	11	631.42	351.50	13,790.82	4,934.34
	12	461.40	274.91	4,372.59	2,530.85
1993	1	522.45	280.77	3,012.46	1,808.79
	2	384.45	226.52	902.34	1,252.09
	3	532.17	338.57	1,480.63	3,726.12
	4	521.02	307.69	20,627.22	4,435.88
	5	729.81	407.85	1,576.36	1,914.69
	6	455.28	246.60	1,220.75	1,613.65
	7	555.91	220.36	571.10	1,335.13
	8	740.42	375.69	50,860.87	8,271.33
	9	275.74	228.71	1,976.68	1,757.70
	10	646.93	388.08	628.70	1,731.06
	11	848.26	465.62	3,117.16	2,276.19
	12	884.68	493.68	12,566.14	2,867.36
합계		26,589.91	18,216.26	562,082.68	190,713.55

자료: 農産貿易統計(www.agrapp.coa.gov.tw)

부표 2. WTO 가입 후 대만 쌀 수출입 추이, 2002. 1.~2004. 8.

단위: 천달러

연도	월	수입		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2	1	732.56	449.90	15,213.75	3,057.20
	2	743.75	410.20	32,158.28	4,455.30
	3	1,510.18	754.30	5,735.18	1,682.10
	4	7,498.07	2,666.40	929.36	1,024.40
	5	5,674.97	2,115.90	45,965.50	7,049.00
	6	3,980.42	1,753.60	894.09	1,141.50
	7	2,569.94	1,007.40	1,027.77	1,173.60
	8	12,396.17	3,940.40	1,762.60	1,170.20
	9	27,106.44	7,820.30	1,631.07	1,318.80
	10	22,153.16	6,795.90	642.92	971.50
	11	7,046.98	2,198.20	851.06	1,091.60
	12	16,446.36	4,871.10	442.62	914.60
2003	1	33,446.51	9,304.40	881.24	827.00
	2	10,749.79	2,923.70	681.02	737.20
	3	2,052.66	793.30	644.85	985.70
	4	2,376.51	1,105.70	355.70	719.70
	5	4,489.00	1,745.10	396.02	805.00
	6	9,373.95	3,246.50	313.09	682.40
	7	1,712.50	1,177.80	285.49	631.40
	8	16,711.48	6,251.90	491.97	725.30
	9	5,342.04	2,052.30	328.80	721.80
	10	14,339.75	5,706.70	576.00	864.70
	11	27,776.17	10,684.70	669.00	1,108.30
	12	24,655.51	9,565.10	1,359.93	1,273.80
2004	1	27,350.76	11,745.80	703.74	800.00
	2	3,118.37	1,435.30	296.58	653.80
	3	9,099.91	3,123.20	568.58	934.60
	4	14,293.74	5,688.90	522.13	792.20
	5	8,553.12	3,376.90	1,066.53	1,248.60
	6	10,489.98	4,445.20	741.31	873.90
	7	10,347.97	3,741.90	867.00	861.20
	8	16,704.37	5,274.80	328.44	700.00
합계		360,843.09	128,172.80	119,331.64	41,996.40

자료: 農產貿易統計(www.agrapp.coa.gov.tw)

부표 3. 대만 쌀과 쌀 조제품의 국별 수입 현황, 1989-95

단위: 톤, 천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수량	금액												
태국	2,708	885	4,208	1,372	4,454	1,424	4,855	1,828	5,496	1,803	3,366	1,186	3,806	2,665
일본	466	1,997	635	2,664	374	1,292	291	1,645	186	1,125	134	759	130	769
미국	431	275	228	150	337	199	413	270	1,383	1,020	2,229	1,500	1,067	663
베트남	-	-	-	-	-	-	-	-	-	-	342	131	140	65
호주	-	-	-	-	-	-	-	-	22	7	-	-	-	-
말레이시아	3	6	12	15	25	73	5	14	3	7			100	18
한국	17	12	2	5	-	-	-	-	-	-	2	5	-	-
홍콩	2	4	0	1	1	3	1	2	3	7	2	6	4	11
싱가폴	12	54	3	12	-	-	-	-	-	-	-	-	-	-
중국	-	-	-	-	-	-	-	-	-	-	38	17	-	-
스위스	1	4	5	17	2	6	1	5	2	6	1	6	-	-
인도네시아	0	1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2	5	-	-	-	-
프랑스	-	-	-	-	-	-	-	-	-	-	-	-	1	4
벨기에	-	-	-	-	-	-	-	-	-	-	209	290	168	263
필리핀	-	-	-	-	-	-	-	-	-	-	-	-	1	4
기타	-	-	-	-	-	-	2	2	0	0	2	4	1	2
합계	3,640	3,238	5,093	4,236	5,193	2,997	5,566	3,767	7,097	3,980	6,325	3,904	5,418	4,464

자료: 農產貿易統計(www.agrapp.coa.gov.tw)

부표 4. 대만 쌀과 쌀 조제품의 국별 수입 현황, 1996-03

단위: 톤, 천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태국	3,742	2,170	3,407	2,005	3,380	1,658	4,481	2,000	5,376	2,103	5,303	1,960	22,918	7,388	31,994	10,885
일본	184	989	263	1,349	215	983	243	1,216	243	1,244	510	1,972	660	2,634	693	2,638
미국	1,001	479	1,687	833	115	57	2	9	707	292	239	69	57,636	16,296	103,693	35,454
베트남	-	-	118	59	400	162	222	243	148	231	405	515	166	238	153	186
호주	200	66	-	-	-	-	-	-	-	-	-	-	25,953	7,745	1,121	532
말레이시아	4	3	-	-	-	-	-	-	4	6	4	9	-	-	-	-
한국	5	18	-	-	-	-	3	7	1	10	3	16	40	65	33	56
홍콩	10	33	10	30	4	11	3	8	153	264	26	30	378	285	229	242
싱가폴	-	-	-	-	-	-	-	-	-	-	-	-	2	5	-	-
중국	-	-	-	-	-	-	-	-	93	53	-	-	-	-	-	-
스페인	-	-	1	10	1	9	2	12	-	-	-	-	-	-	8	30
필리핀	-	-	-	-	-	-	391	682	50	324	25	129	33	64	15	26
인도	-	-	-	-	-	-	-	-	-	-	-	-	-	-	250	45
미얀마	-	-	-	-	-	-	-	-	-	-	-	-	60	11	740	129
오스트리아	-	-	-	-	-	-	-	-	-	-	-	-	10	49	2	4
영국	-	-	-	-	-	-	-	-	-	-	-	-	1	2	-	-
이집트	-	-	-	-	-	-	-	-	-	-	-	-	-	-	14,095	4,330
기타	-	-	0	1	1	-	-	-	-	-	-	-	2	2	-	-
합계	5,146	3,758	5,486	4,287	4,116	2,880	5,347	4,177	6,775	4,527	6,515	4,700	107,859	34,784	153,026	54,557

자료: 農産貿易統計(www.agrapp.coa.gov.tw)

부표 5. 쌀과 쌀 조제품의 국별 수출 현황, 1989-95

단위: 톤, 천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세네갈	21,400	5,138	15,000	2,182	-	-	-	-	-	-	-	-	-	-
토고	18,850	3,937	16,600	2,415	-	-	9,000	1,537	20,000	2,623	26,500	2,100	97,200	17,834
필리핀	10,254	3,175	-	-	-	-	-	-	-	-	-	-	-	-
터키	10,000	2,592	-	-	-	-	-	-	-	-	-	-	-	-
일본	7,652	5,497	4,410	5,027	18,163	6,609	3,699	5,541	3,029	5,216	1,736	3,169	1,425	3,180
스리랑카	5,250	1,381	-	-	-	-	-	-	-	-	-	-	-	-
베냉	-	-	-	-	-	-	24,000	4,271	43,063	8,006	50,950	5,534	-	-
홍콩	5,160	1,990	6,968	2,743	14,280	4,839	14,763	7,355	4,299	3,817	753	2,079	1,923	3,876
미국	1,833	4,131	2,416	5,166	-	-	2,209	5,259	2,229	5,117	2,327	5,119	2,586	6,167
싱가폴	1,450	1,049	2,270	1,117	9,712	2,699	7,937	2,522	3,357	1,816	678	2,094	1,230	2,412
한국	809	3,052	-	-	-	-	-	-	-	-	-	-	259	1,214
이탈리아	-	-	-	-	17,500	3,646	-	-	-	-	-	-	-	-
브루키나파소	-	-	10,000	1,801	-	-	-	-	-	-	-	-	-	-
마다가스카르	-	-	-	-	25,000	5,414	-	-	-	-	-	-	-	-
코디디부아르	-	-	-	-	20,000	5,712	-	-	-	-	-	-	-	-
앙골라	-	-	6,000	1,082	15,500	3,368	30,000	6,013	-	-	-	-	-	-
브라질	-	-	-	-	15,002	2,747	-	-	-	-	-	-	-	-
미얀마	-	-	-	-	11,000	2,016	-	-	-	-	-	-	-	-
요르단	-	-	-	-	6,000	3,501	-	-	-	-	-	-	-	-
기니비사우	-	-	10,000	1,990	-	-	15,000	2,677	-	-	-	-	-	-
라이베리아	-	-	10,000	2,092	-	-	3,000	626	-	-	-	-	-	-
말레이시아	-	-	-	-	-	-	4,833	1,455	1,086	305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	28,000	7,564
프랑스	-	-	-	-	-	-	-	-	18,020	2,459	-	-	-	-
독일	-	-	-	-	-	-	-	-	273	774	198	507	-	-
모잠비크	-	-	-	-	-	-	-	-	-	-	25,000	2,206	-	-
네덜란드	-	-	-	-	-	-	-	-	-	-	287	727	815	1,678
케냐	-	-	-	-	-	-	-	-	-	-	-	-	59,650	13,694
캐나다	-	-	-	-	-	-	-	-	196	731	188	728	255	1,076
기타	4,155	6,958	12,952	5,694	12,067	9,459	1,448	3,301	2,988	2,126	15,148	1,731	4,621	2,795
합계	86,813	35,848	96,616	31,309	164,224	50,010	115,889	40,557	98,540	32,990	123,765	25,994	197,964	61,490

주: 연도별 수출액이 높은 10개국 정리.

자료: 農産貿易統計(www.agrapp.coa.gov.tw).

부표 6. 쌀과 쌀 조제품의 국별 수출 현황, 1996-03

단위: 톤, 천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세네갈	-	-	-	-	-	-	-	-	-	-	-	-	-	-	-	-
토고	-	-	-	-	-	-	24,000	4,240	10,000	1,389	-	-	-	-	-	-
필리핀	-	-	-	-	-	-	-	-	1,726	804	-	-	-	-	-	-
터키	10,000	3,099	-	-	-	-	-	-	-	-	-	-	-	-	-	-
일본	1,452	3,153	1,374	2,885	1,382	2,484	1,424	2,644	-	-	1,577	2,815	1,371	2,548	1,284	2,280
베냉	30,000	8,429	13,200	2,372	-	-	-	-	-	-	-	-	-	-	-	-
홍콩	1,614	3,209	659	2,838	343	993	-	-	5,275	2,684	4,427	1,834	1,199	724	161	355
미국	2,864	7,099	2,815	6,727	2,726	6,106	2,617	5,969	2,714	6,340	2,277	4,753	2,084	4,467	1,545	3,545
싱가폴	3,530	3,464	5,710	3,454	5,986	2,790	4,612	2,088	5,029	2,762	4,830	2,373	6,334	3,131	3,241	2,215
한국	265	1,199	-	-	5,000	941	-	-	-	-	-	-	-	-	-	-
북한	-	-	5,000	930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6,514	1,211	-	-	-	-	-	-	-	-
앙골라	-	-	-	-	12,000	2,597	-	-	-	-	-	-	-	-	-	-
기니	-	-	25,000	4,528	-	-	13,000	2,259	-	-	21,000	2,522	8,000	958	-	-
콩고	-	-	-	-	20,000	4,737	24,000	5,395	-	-	-	-	-	-	-	-
공화국	-	-	-	-	-	-	-	-	-	-	-	-	-	-	-	-
라이베리아	-	-	-	-	-	-	27,000	4,774	56,000	8,083	62,000	8,044	48,000	6,120	-	-
말레이시아	-	-	-	-	-	-	-	-	1,865	1,347	1,772	947	1,439	650	87	174
인도네시아	22,003	5,962	-	-	-	-	-	-	-	-	-	-	-	-	59	124
영국	-	-	-	-	-	-	-	-	-	-	-	-	-	-	27	62
스페인	-	-	-	-	-	-	5,001	1,153	-	-	-	-	-	-	-	-
모잠비크	-	-	-	-	-	-	-	-	6,000	757	-	-	8,000	1,010	-	-
네덜란드	1,293	2,666	1,274	2,578	205	615	-	-	-	-	-	-	-	-	87	149
케냐	30,000	8,029	28,000	5,149	18,000	3,794	13,500	2,982	28,500	4,065	13,000	1,524	13,000	1,561	-	-
가나	-	-	-	-	-	-	-	-	13,000	1,862	-	-	-	-	-	-
카메룬	-	-	-	-	-	-	-	-	-	-	31,000	3,995	-	-	-	-
캐나다	-	-	344	1,132	282	1,045	-	-	-	-	-	-	-	-	210	529
코트디부아르	-	-	-	-	-	-	-	-	-	-	21,000	2,547	12,000	1,593	-	-
호주	-	-	-	-	-	-	-	-	-	-	-	-	-	-	97	256
기타	1,221	3,315	990	2,882	670	1,892	2,021	4,541	8,114	6,017	10,453	3,611	5,827	2,288	185	393
합계	104,242	49,624	84,366	35,475	66,594	27,994	123,689	37,256	138,223	36,110	173,336	34,965	107,254	25,050	6,983	10,082

주: 연도별 수출액이 높은 10개국 정리.

자료: 農産貿易統計(www.agrapp.coa.gov.tw).

부표 7. 대만 쌀 가격 및 정부수매가 변동 추이

단위: 위안/kg

연도	산지가격 (조곡기준)		소매가격 (백미기준)		수매가			
	자포니카	인디카	자포니카	인디카	계획수매		보도수매	
					자포니카	인디카	자포니카	인디카
1989	15.57	15.17	28.58	29.17	19.00	18.00	16.50	15.50
1990	15.58	15.86	29.75	30.70	19.00	18.00	16.50	15.50
1991	16.44	15.90	30.69	30.36	19.00	18.00	16.50	15.50
1992	16.56	15.87	30.82	30.99	19.00	18.00	16.50	15.50
1993	17.68	16.59	32.44	32.89	21.00	20.00	18.00	17.00
1994	16.68	16.59	31.98	33.36	21.00	20.00	18.00	17.00
1995	18.72	18.81	35.25	36.69	21.00	20.00	18.00	17.00
1996	19.91	23.69	36.94	49.53	21.00	20.00	18.00	17.00
1997	17.95	18.83	34.86	44.27	21.00	20.00	18.00	17.00
1998	18.72	17.16	34.67	41.23	21.00	20.00	18.00	17.00
1999	19.61	18.45	35.97	41.09	21.00	20.00	18.00	17.00
2000	18.06	17.89	33.61	40.40	21.00	20.00	18.00	17.00
2001	18.28	16.96	32.65	37.67	21.00	20.00	18.00	17.00
2002	18.80	17.89	34.21	39.62	21.00	20.00	18.00	17.00
2003	16.06	14.55	29.57	37.36	21.00	20.00	18.00	17.00
2004	17.32	14.17	30.02	36.91	21.00	20.00	18.00	17.00

자료: 臺灣糧食統計要覽.

## ABSTRACT

## The Opening of Taiwan's Rice Market and its Implications

In the face of rice negotia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negotiation strategies to minimize both negative impact on rice farmers and related industries in addition to Korea's rural economy. To prepare for optimal results in negotiations, we should take advantage of, and ponder Taiwan's experience- as it was previously in a similar situation as Korea is now fa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rice tariffication, changes in the domestic rice industry before and after rice market opening, the impacts of such rice market opening, rice import management and the changes in policy after tariffication. Such results may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rice negotiations and such counter plans.

Taiwan's tariffication gives us an informative lesson that the opening of the rice market is a type of tariffication or MMA expansion. This process, with additional terms demanded by rice importers may be the key factor that influences Korea's domestic rice market and rice industry. Terms of such a rice market opening include particular restrictions on the management of rice imports.

These restrictions are obstacles to an effective domestic rice industry- it is important that rice imports are released into the domestic market. Based on the Taiwanese experience,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securing conditions in which we may take a more flexible measure on imported rice in the domestic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 plans such as a Rice Import Relief System, which has been successfully operating since the start of tariffication in Taiwan. This system gives rice farmers a sense of price stability when a sharp decline in prices may occur. In addition, diverse measures for price stabilization, production restructuring and rice import management, and long-term measures to secure food security are necessary.

## 참 고 문 헌

- 김태곤, 정정길,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KREI 농정연구속보 2004-3(제8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윤석원 외,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중앙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00.
- 中華農學會, 「台灣農業政策之研究」, 2000.
- 行政院農業委員會, 「農產貿易統計要覽」, 2002.
- 行政院農業委員會, 「臺灣農業年報」, 2002.
- 行政院農業委員會, 「臺灣糧食統計要覽」, 2002.
- 陳淑珍, “台灣稻米政策之有效性檢定-向量最適中理論之應用”, 中原大學, 2003.
- 台灣省政府糧食處, 「台灣糧食統計要覽」, 1999.
- 張靜貞 외, “稻米開放進口與稻作政策調整”, 「自由中國之工業」, 2000.
- 楊明憲 외, “WTO 農業談判有關市場開放議題對稻米產業沖擊之模擬評估”, 楊明憲, “WTO 新回合農業談判有關部門稻米進口議題之分析”, 「台灣土地金融季刊」 제37권 제4기, 2000.
- 楊明憲, “台灣稻米政策之各時期成效與定位”, 「台灣銀行季刊」 제47권 제3기, 1996.
- 楊明憲, “台灣經濟發展過程中, 稻米政策之演變與政策經濟分析”, 「農業金融論叢」 제34집, 1995.
- 楊明憲, “稻農受稻米進口損害之求助金額決定-依中美農業諮商協議分析”, 「台灣土地金融季刊」, 제35권 제3기, 1998.
- 楊明憲, “台灣稻米運銷體系與競爭力之研究-兼論糧商組織行爲”, 「台灣銀行季刊」 제51권 제4기, 2000.
- 楊明憲. 1993. 「臺灣稻米政策之政治經濟決策分析」. 國立臺灣大學博士論文.
- 李元和, “台灣稻米產銷政策之檢討與基本改革措施效益之分析”, 「農業經濟叢刊」 제9권 제2기, 2004.

- 李元和, “現行稻米政策之檢討与替代政策之研究”, 『農業金融論叢』.
- 張靜貞 외, “台灣加入WTO后稻米政策的調整-市場導向与非市場導向的經濟分析”, 『自由中國之工業』, 2001.
- 陳秀琴. 1999. “米食文化傳承與推廣.” 『農政與農情』. 90期. 行政院農業委員會.

**P69**

대만의 쌀 시장 개방과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0.

발 행 2004. 10.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 ~5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